

의안번호	2204384
의 퇴 인	한기호의원
회 답 일	2024. 11. 11 .
추계번호	24D406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0억 6,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476억 1,500만원(연평균 95억 2,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도회의의원 정수 확대 (안 제17조의2)	513	654	653	664	674	3,158	631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안 제17조의3)	5,093	9,668	9,557	9,741	9,928	43,987	8,797
각종 계획 수립 (안 제34조의3, 제58조의2, 제73조의12)	460	—	—	—	—	460	92
민·관·군협력위원회 개최 (안 제73조의2)	2	2	2	2	2	12	2
합 계	6,068	10,324	10,212	10,407	10,604	47,615	9,523

- 주: 1. 안 제17조의2에 따라 증가하는 비례대표도회의의원 정수는 총 4명으로 가정
 2. 안 제17조의3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의회, 시·군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 정수만큼 증원하되, 2026년에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3까지, 2027년에 지방의회의원 정수까지 연차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3.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도회의의원정수 에 관한 특례)	— 강원특별자치도회의의원(이하 “도회의의원”이라 한다) 중 비례대표도회의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 항에 따른 지역구도회의의원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17조의3 (의원의 정책지 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 도회의의원 및 시·군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 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3	안 제17조의4 (도의회 사무기구 및 소속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 도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1항) - 강원특별자치도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사무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29조 (종합계획 수립)	- 도지사는 외국인근로자정책 및 첨단 지식분야 외국인 유학생 육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33조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34조의2 (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강원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강원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강원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음(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7	안 제34조의3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 도지사는 「과학기술기초법」 제7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48조의2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도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9	안 제48조의3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소규모(학생수 60명 이하를 말한다)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48조의4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 도교육감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도조례로 정한 학생수 이하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 도조례로 정한 원아 수 이하의 유치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 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라 공동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제2항)	재량규정
11	안 제48조의5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국가와 강원자치도 및 시군은 글로벌교육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2	안 제48조의8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음(제1항) -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제4항) -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 시·군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음(제6항)	의무규정·재량규정
13	안 제48조의9 (국제학교의 설립 등)	- 국가, 강원자치도 또는 시·군, 국내 법령 또는 외국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글로벌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제1항) -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4	안 제48조의17 (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등)	-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항) -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	의무규정·재량규정

		다)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 및 제70조의2를 준용함.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함(제2항) －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제3항) －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제4항) － 도교육감은 국공립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제6항)	
15	안 제48조의21 (국제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 국제학교의 장은 국제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또는 수업료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방안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16	안 제54조의4 (강원취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한 특례)	－ 도지사는 강원취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1항) －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해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취한우로 인정한 개체가 거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7	안 제58조의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해양수산부장관은 강원자치도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법」 제44조제1항의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적기준은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8	안 제58조의3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강원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함(제1항) －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에 따른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의무규정

		제146조제3항 및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음(제2항)	
19	안 제73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협력위원회)	- 강원자치도 내의 민·관·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민·관·군협력위원회(이하 "민·관·군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 민·관·군협력위원회는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규정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군(軍)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민원 중 군(軍)과 관련한 민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민·관·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함(제2항) - 민·관·군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작전·훈련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군단장급 군(軍) 지휘관,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의 시장 또는 군수 중에서 각 1명씩 위촉함(제3항) - 민·관·군협력위원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제4항)	의무규정
20	안 제73조의3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 도지사는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지원,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형 관광산업 고도화, 지역명소를 활용한 야간관광산업 육성,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활동 지원, 그 밖에 관광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제1항) - 강원자치도의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21	안 제73조의4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제1항) -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국제회의의 유치·개최 지원,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확충,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국제협력의 촉진,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국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2	안 제73조의5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도민의 일상속 문화예술공존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시행하여야 함(제1항) - 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	의무규정

		및 향유 활성화 지원,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육성,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23	안 제73조의6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 도지사는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 및 의료데이터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제조업,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이하 "바이오헬스산업"이라 한다) 발전 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 도지사는 국가의 의료연구개발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사업화 추진을 위해 강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2항) –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에 다른 연구중심병원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이 경우 연구중심병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의무규정·재 량규정
24	안 제73조의12 (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 도지사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5	안 제73조의13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 도지사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실태조사의 목적, 방법과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제1항)	재량규정
26	안 제73조의15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의 조사와 개발·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함(제1항) –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 및 해제 할 수 있음(제2항)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발전지구의 주변지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27	안 제73조의16 (수소산업육성 및 지원)	- 도지사는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지원,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및 활성화,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등의 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수소산업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28	안 제73조의20 (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 례)	- 도지사는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외의 광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이 조에서는 "핵심광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 핵심광물 산업 관련 기술 및 대체물질 등의 연구개발·실증, 핵심광물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자원안보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7조의2 (강원특별자치도도 의회의원 정수에 관 한 특례)	○	-
2	안 제17조의3 (의원의 정책지원 전 문인력에 관한 특례)	○	-
3	안 제17조의4 (도의회 사무기구 및 소속지방공무원의 정 원에 관한 특례)	×	- 개정안에 따라 확대될 도의회 사무기구 및 증원될 지방공무원의 규모를 현시점에서 추정 곤란
4	안 제29조 (종합계획 수립)	-	- 기존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비용내에서 수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5	안 제33조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 한 특례)	×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를 통해 규정할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재정규모 등을 추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6	안 제34조의2 (강원전략연구사업 에 관한 특례)	×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 위해서는 강원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과정을 거쳐야함으로 현시점에서 추계 곤란
7	안 제34조의3 (강원과학기술원 설 립)	○	-
8	안 제48조의2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	- 향후 신설될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추정 곤란
9	안 제48조의3 (소규모학교 협동교 육과정 운영의 특례)	×	- 기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 공동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협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추정 곤란
10	안 제48조의4 (학교급식 운영에 관 한 특례)	×	- 공동급식센터의 규모, 필요 인력 등에 관한 소요 비용을 현시점에서 추정 곤란
11 ~ 15	안 제48조의5~21 (글로벌교육도시 지 정 및 국제학교 설립)	×	-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에 설립될 국제학교의 위치, 면적, 필요 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시점에서 추정 곤란
16	안 제54조의4 (강원취한우의 보호· 육성을 위한 특례)	×	- 강원취한우 사육실태조사, 유전자원의 수집 보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의 추계 곤란
17	안 제58조의2 (항만배후단지의 지 정 등에 관한 특례)	○	-
18	안 제58조의3 (선박등록특구의 지 정)	×	- 국제선박특구로 지정되면 선박 등록에 따른 각종 세금 감면이 발생하나, 현 시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정수입감소액의 추계가 곤란함
19	안 제73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민· 관·군협력위원회)	○	-
20	안 제73조의3 (지역특화 관광산업 의 육성)	×	-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시책 마련을 명시한 선언적 형식의 내용으로 현시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를 추정 곤란
21	안 제73조의4 (국제회의산업 육성 을 위한 특례)	×	- 기존 국제회의도시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만 포함하고 있고,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체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 규모 등 추계 곤란

22	안 제73조의5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한 선언적 형식의 내용으로 현시점에서 사업 범위·내용 등을 추정 곤란
23	안 제73조의6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적 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 규모 및 자금 지원 범위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계가 곤란함
24	안 제73조의12 (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	-
25	안 제73조의13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	- 개정안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26	안 제73조의15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	-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추정 곤란
27	안 제73조의16 (수소산업육성 및 지원)	○	-
28	안 제73조의20 (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	- 핵심광물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을 명시한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추정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7조의2에 따라 비례대표도의회의원 정수를 지역구도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할 경우, 비례대표도의회의원 정수는 4명이 추가되므로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비례대표도의회의원 정수는 총 4명¹⁾으로 가정
- 현재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 정수는 현재 49명(지역구 44명, 비례대표 5명)으로, 「공직선거법」 제22조²⁾에서 도의원정수를 인구·행정구역 등의 조

1) 9명(지역구도의회의원 정수 44명 × 20%) - 5명(비례대표도의회의원 정수)

2)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계기간 동안 조정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제17조의2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도의원 의정활동 관련 비용³⁾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비용이 발생함

- 도의원 의정활동비는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⁴⁾하며, 기본경비는 인건비성 경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대비 기본경비 비율(25.8%)⁵⁾을 적용하여 산출
- 자산취득비는 2026년, 2027년에 발생하며 1인당 2026년에 501만원, 2027년에 512만원 적용
 -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⁶⁾
-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고용 및 산재보험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관부담금은 월정수당에 요율⁷⁾을 곱하여 산정
 - 도의원의 연령을 모두 60세 미만으로 가정하여 국민연금을 추계기간 동안 계속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②, ③ (생략)

④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3)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기본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포함), 자산취득비

4)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의정활동비는 월 200만원이며, 월정수당은 2024년에 연간 3,804만원이고 2025년부터는 2024년 금액에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함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2023.12.14. 개정)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5)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액 중 인력운영비가 12%, 기본경비등이 3.1%로 기본경비등의 비율은 인력운영비의 25.8%임

6)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4.10)

(단위: 천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인당 자산취득비	4,806	4,912	5,010	5,125	5,233	5,343

7)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요율(장기요양보험 포함)을 합쳐 2026년 8.567%, 2027년 8.63%, 2028년 8.694%, 2029년 8.786%, 2030년 8.88%

- 개정안 제17조의3에 따라 도의원 1인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을 두는 것으로 가정하며, 2026년에는 추가되는 도의회의원정수의 절반인 2명을, 2027년에 나머지 2명을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17조의3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도의회 및 시·군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 정수만큼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도의회에는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시·군의회에는 7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가정

- 현행법령⁸⁾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면, 최대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총 119명(도의회 25명, 시군의회 94명)이고, 119명 전부를 채용한다고 가정
 - － 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는 총 49명(지역구 44명, 비례대표 5명)으로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는 총 25명이고,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총 174명(지역구 151명, 비례대표 23명)으로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는 총 94명임

8)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표 2]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

(단위: 명)

구 분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의원정수	현행법에 따라 임용 가능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
도의회	44	5	49	24	25
시·군의회	151	23	174	80	94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은 2026년에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2027년에 지방의회의원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연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
 - 도의회: 2026년 12명, 2027년 13명 증원
 - 시·군의회: 2026년 50명, 2027년 44명 증원
 -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1조가 2022년 처음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도 연차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가정함⁹⁾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기본연봉액과 성과연봉액으로 구성되며, 계약기간 동안 매년 성과연봉액에 변동이 발생하나, 현재로서는 지방의회별 각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성과연봉 등급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2024년 연봉액에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
- 각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업무 공간이 필요하나 기존의 지방의회 청사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34조의3에 따른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안 제58조의2에 따른 향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안 제73조의12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 발전계획 수립 비용은 유사 연구·용역 사례의 비용을 준용함

9) 법률 제17893호 부칙(2021.1.12. 전부개정, 2022.1.13. 시행)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 3개의 계획은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73조의2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간위원은 6명으로 가정하고, 연간 2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참석 수당은 20만원으로 가정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안 제17조의2)

- (도의회의원 수당 등) 도의회의원 정수 1인을 확대하는 경우, 수당 등은 2026년 8,799만원 등 5년 동안 4억 3,038만원이 발생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에 인하여 소요되는 도의회의원 1인에 대한 수당 등의 비용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며, [표 3]과 같이 추계됨

[표 3] 도의회의원정수 1인 확대에 따른 비용 추정: 2026~2030년

(단위: 천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의정활동비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월정수당	39,279	40,025	40,785	41,560	42,350
기관부담금	3,365	3,454	3,546	3,651	3,761
기본경비	16,326	16,518	16,715	16,914	17,118
자산취득비	5,020	—	—	—	—
합 계	87,990	83,997	85,046	86,125	87,2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의 전제에 따라 비례대표도의회의원 정수를 총 4명 증원할 경우, 비례대표도의회의원에 대한 수당 등 비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5,200만원 등 17억 2,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비례대표도의회의원 정수 4명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도회의의원정수 1인 확대에 따른 비용(A, 백만원)	88	84	85	86	87	-
도회의의원 정수(B, 명)	4	4	4	4	4	-
추가재정소요 (C=A×B, 백만원)	352	336	340	345	349	1,7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정책지원 전문인력 비용) 추계의 전제에 따라 도회의의원 1인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하게 되므로 4명을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2026년에 2명, 2027년에 2명 연차적으로 채용하고, 1인당 지급액은 안제17조의3에 따른 추계와 동일하다고 가정

[표 5] 정책지원 전문인력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인건비	1인당 인건비(A, 천원)	73,119	74,508	75,924	77,366	78,836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B, 명)	2	4	4	4	4
	소 계(C=A×B, 백만원)	146	298	303	309	315
기본 경비	기본경비(D, 천원)	2,480	2,480	2,480	2,480	2,480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E, 명)	2	4	4	4	4
	소 계(F=D×E, 백만원)	5	10	10	10	10
자산 취득비	자산취득비(G, 천원)	5,010	5,120	-	-	-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규 채용 수(H, 명)	2	2	0	0	
	소 계(I=G×H, 백만원)	10	10	0	0	
합 계(C+F+I, 백만원)		161	318	313	319	325

주: 인건비는 보수와 기관부담금을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계기간(2026~2030년) 중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억 1,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1억 5,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도의회의원 수당 등	352	336	340	345	349	1,722
정책지원 전문인력 비용	161	318	313	319	325	1,436
합 계	513	654	653	664	674	3,1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안 제17조의3)

- (보수) 추계의 전제에 따라 증원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의회는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군의회는 7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고, 2024년 일반임기제 6급·7급 지방직공무원의 연봉액에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하여 1인당 보수를 추계함

-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과급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따른 연봉하한액의 120%를 적용¹⁰⁾하고, 추계기간동안 공무원 임금 평균 상승률¹¹⁾에 따라 상승한다고 가정함

- 수당은 특수업무수당¹²⁾(5급 월 80,000원, 6급 월 60,000원) 적용

1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1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2024.10.)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9%	1.9%	1.9%	1.9%	1.9%	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반영¹³⁾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추계기간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7] 일반임기제 6급 및 7급 지방공무원 보수: 2024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봉급	수당	실비변상	합 계
일반임기제 6급 지방공무원	64,958	1,560	3,900	70,418
일반임기제 7급 지방공무원	56,588	1,440	3,840	61,868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관부담금) 인건비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연도별 부담률을 적용하여 추계함¹⁴⁾

[표 8] 정책지원 전문인력 6급 및 7급 1명 채용에 따른 보수 및 기관부담금: 2026~2030년

(단위: 천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6급	보수	73,119	74,508	75,924	77,366	78,836
	기관부담금	9,659	9,917	10,174	10,437	10,706
	소 계	82,778	84,425	86,098	87,803	89,542
7급	보수	64,241	65,462	66,705	67,973	69,264
	기관부담금	8,486	8,713	8,939	9,170	9,406
	소 계	72,727	74,175	75,644	77,142	78,6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는 매년 248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2024년 10월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정원은 137명이며, 기본경

13) 정액급식비: 140,000원

직급보조비: 6급 185,000원, 7급 180,000원

14) 공무원 인건비 기관부담금요율 전망(2024.10)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관부담금	13.11%	13.21%	13.31%	13.40%	13.49%	13.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는 3억 3,971만원으로 1인당 기본경비는 248만원임

- 기본경비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표 9] 정책지원 전문인력(6급 및 7급) 기본경비: 2026~2030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6급	기본경비(A, 천원)	2,480	2,480	2,480	2,480	2,480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B, 명)	12	25	25	25	25
	합 계 (C=A×B, 백만원)	30	62	62	62	62
7급	기본경비(D, 천원)	2,480	2,480	2,480	2,480	2,480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E, 명)	50	94	94	94	94
	합 계 (F=C×D, 백만원)	124	233	233	233	2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¹⁵⁾는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자산취득비를 적용하여 2026년 기준 501만원, 2027년 기준 512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6년에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3까지, 2027년에 지방의회의원 정수까지 2년에 걸쳐 증원하면, 자산취득비는 2026년과 2027년에만 발생함
-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2026년 12명, 2027년 13명을 증원하고, 시·군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2026년에 50명, 2026년에 4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

15)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4.10)

(단위: 천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인당 자산취득비	4,907	5,010	5,120	5,228	5,337	5,4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10]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2026~2030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6급	자산취득비 단가(A, 천원)	5,010	5,120	-	-	-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B, 명)	12	13	-	-	-
	합 계(C=A×B, 백만원)	60	66	-	-	-
7급	자산취득비 단가(D, 천원)	5,010	5,120	-	-	-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E, 명)	50	44	-	-	-
	합 계(F=D×E, 백만원)	250	225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계기간(2026~2030년) 중 의원 정수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439억 8,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6급	인건비(a)	993	2,110	2,152	2,195	2,238	9,690
	기본경비(b)	30	62	62	62	62	340
	자산취득비(c)	60	66	-	-	-	126
	소 계(A=a+b+c)	1,083	2,238	2,214	2,257	2,300	10,092
7급	인건비(d)	3,636	6,972	7,110	7,251	7,395	32,365
	기본경비(e)	124	233	233	233	233	1,056
	자산취득비(f)	250	225	-	-	-	475
	소 계(B=d+e+f)	4,010	7,430	7,343	7,484	7,628	33,895
합 계(A+B)		5,093	9,668	9,557	9,741	9,928	43,98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각종 계획 수립(안 제34조의3, 안 제58조의2 및 안 제73조의12)

- 안 제34조의3에 따른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 첫해인 2026년에 9,0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 (재)강원연구원, 2014~2015년, 8,600만원
- 안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립·운영비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안 제58조의2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비용은 경상남도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 첫해인 2026년에 2억 7,0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항만배후도시 종합발전 방안 수립’, (재)경남연구원, 2019~2021년, 2억 7,000만원

□ 안 제73조의12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 발전계획 수립 비용은 인천광역시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 첫해인 2026년에 1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전략계획 수립용역’,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년, 9,500만원

□ 개정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운영에 관한 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지역 건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4억 6,0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3개 계획 모두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표 12] 각종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운영에 관한 계획	90	0	0	0	0	9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 계획	270	0	0	0	0	270
지역 건설산업 발전계획	100	0	0	0	0	100
합 계	460	0	0	0	0	460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협력위원회(안 제73조의2)

□ 추계의 전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협력위원회는 10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을 6명으로, 매년 2회 정례회 개최, 회의 참석 수당은 20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2,400만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위원 회의수당은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⁶⁾ 및 위원회 참석비,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비용 등을 고려하여 20만원으로 가정

[표 13]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협력위원회 개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민간위원 수(A, 명)	6	6	6	6	6	—
회의 개최 횟수(B, 건)	2	2	2	2	2	—
회의 참석 수당 (C, 백만원)	0.2	0.2	0.2	0.2	0.2	—
합 계 (D=A×B×C, 백만원)	2.4	2.4	2.4	2.4	2.4	12

주. 민간위원 수, 회의 개최 건수, 회의 참석 수당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0억 6,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476억 1,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16)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중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표 1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	513	654	653	664	674	3,158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5,093	9,668	9,557	9,741	9,928	43,987
각종 계획 수립	460	—	—	—	—	460
민·관·군협력위원회 개최	2	2	2	2	2	12
합 계	6,068	10,324	10,212	10,407	10,604	47,6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